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67 발의연월일: 2025. 2. 14.

발 의 자 : 양부남 • 이개호 • 채현일

조승래 • 민형배 • 정진욱

전진숙 · 조계원 · 이정헌

황명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을 개정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금액을 종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어 검증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금액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 향후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검증 수요를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검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검증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내실있는 지방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 2.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3명 이상의 세무사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감사 또는 외부기관의 감사 등으로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이확인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검증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검증기 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3년
- 2.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2년
- 3. 고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1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게재하고, 해당 검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정 보
고) ① (생 략)	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	2
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u>「주식회사 등의</u>	<u>다음 각 호의 어느</u>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검증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u> 관으로 선정하여</u>
<u>으로부터</u>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u><신 설></u>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u><신 설></u>	2.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신 설>

③ · ④ (생 략) <신 설>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3명 이상의 세무사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등)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자체감사 또는 외부 기관의 감사 등으로 제17조제2 항 본문에 따른 검증기관의 정 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이 확인된 날부 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검증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 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제39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신 설>

3년

- 2.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 이 발생한 경우: 2년
- 3. 고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 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1 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사실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게재하고, 해당 검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2)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

 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